

고발인 의견서(신속한 수사개시 촉구)

사 건 2018형제40375호 국가정보원법위반등
고 발 인 장경욱 외 8
피고발인 이병호 외 다수

위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신속한 수사 개시를 촉구합니다.

다 음

위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2018. 5. 14.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동 조항은 검사에게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행규정으로서 검사에게 3월 내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고발한 날로부터 거의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는 수사 개시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발인 진술마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 이병호는 전직 국가정보원장, 홍용표는 전직 통일부장관으로, 사건 관련 자료가 모두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정부부처의 관할구역 내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하게 된 경위와 이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입소하자마자 진행된 종업원들의 초기 진술의 내용과 진술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종업원들을 집단 입국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파악되는 정지용과 그 외의 국가정보원 직원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수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종업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만큼 이를 취재한 JTBC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피고발인의 수 및 사안의 복잡성과 관련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195조), 당연히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제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국가 또는 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납치유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

위, 즉 납치유인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소속 공작팀에 의한 납치유인범죄에 대해 검찰이 강제적으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의 범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납치유인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들로서는 직무유기죄 등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1.

위 고발인 장경옥
권정호
오민애
김용민
김진형
김자연
양승봉
신윤경
김인숙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안2부 귀중